

【 3 】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안년월일 : 1998. 10. 22.

제안자 : 유재원의원의 2인

□ 제안이유

- 양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5조제1항제5호의 군립도서관을 삭제하고 부서명칭을 조정하고자 함.
- 현실에 맞지 않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 대상자별과 위반행위별로 하여 불출석과 증언거부로 대별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감사 및 조사대상 기관의 군립도서관을 삭제함.
-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변경(안 제5조제1항제3호)
- 상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.(안 제5조제1항제5호)
-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을 신설함(안 제9조의2)

조례 제 호

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

제5조 제1항제3호의 “농촌지도소”를 “농업기술센터”로 한다.

제5조 제1항제6호의 “상수도사업소”를 “상하수도사업소”로 한다.

제9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제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 2(과태료) ①제9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련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양주군 공무원(이하 “집행부공무원”이라 하며, 감사·조사대상사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에 전출·전보되었을 경우 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.)에 대한 위반행위별 직급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[별표1]과 같다.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으로 전출·전보된 공무원의 직급은 감사·조사대상사무 취급당시의 직급을 기준으로 한다.
2. 제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·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(퇴직자를 포함한다, 이하 이 조에서 같다.)에 대한 위반행위별 직책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[별표2]와 같다. 이 경우 출석요구 당시의 재직자는 출석요구시점 현재의 직책을, 퇴직자는 감사·조사대상사무 취급당시의 최종 직책을 기준으로 한다.
3. 감사·조사대상사무 시행기간중에 집행부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면직·파면 및 퇴직한 사람(이하 “퇴직공무원”이라 한다.)에 대한 위반행위별 직급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[별표3]과 같다. 이 경우 직급은 감사·조사대상사무를 담당할 때의 최종직급을 기준으로 한다.
4.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공무원, 기관 및 단체등의 임직원, 퇴직공무원등을 제외한 사람(이하 “민간인”이라 한다.)에 대한 위반행위별 증인의 유형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[별표4]와 같다.

②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감사·조사기간의 범위안에서 산정한다.

- ③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사실 통보등에 의하여 양주군수(이하 “부과권자”라 한다)가 부과징수 한다.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④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양주군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.
- ⑤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⑥ 부과권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⑦ 부과권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- ⑧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등으로 알 수 있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.1]

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직급별 과태료부과기준  
(제9조의2 제1항제1호 관련)

(단위:만원)

위반행위별	실·국장급이상	과장급	계장급 이하
출석요구불응2회이상	500~400	300~200	100~70
출석요구불응1회	350~300	150~100	50~30
증언전체거부2회이상	350~300	150~100	50~30
증언전체거부1회	250~200	70~50	20~10
증언일부거부2회이상	250~200	70~50	20~10
증언일부거부1회	150~100	30~20	5이하

- <비고> 1. “~” 기호 왼쪽은 그 금액 이하, 오른쪽은 그 금액 이상을 말한다.  
 2. 출석요구불응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, 증언전체 또는 일부거부 1회는 1일간의 증언의 전체 또는 일부거부를 말한다.

[별표2]

위탁법인 및 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직책별 과태료  
부과기준(제9조의2 제1항제2호 관련)

(단위:만원)

위반행위별	위탁법인 및 단체	
	대표	임직원
출석요구불응2회 이상	200~150	100~70
출석요구불응1회	100~70	50~30
증언전체거부2회이상	100~70	50~30
증언전체거부1회	50~30	20~10
증언일부거부2회이상	50~30	20~10
증언일부거부1회	20~15	5이하

- <비고> 1. “~” 기호 왼쪽은 그 금액 이하, 오른쪽은 그 금액 이상을 말한다.  
 2. 출석요구불응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, 증언전체 또는 일부거부 1회는 1일간 증언의 전체 또는 일부거부를 말한다.

## [별표3]

퇴직공무원에 대한 위반 행위별 직급별 과태료부과기준  
(제9조의2 제1항제3호 관련)

(단위:만원)

위반행위별	실·국장급	과장급	계장급 이하
출석요구불응2회이상	200~150	100~70	50~30
출석요구불응1회	100~70	50~30	25~15
증언전체거부2회이상	100~70	50~30	25~15
증언전체거부1회	50~30	20~10	10~5
증언일부거부2회이상	50~30	20~10	10~5
증언일부거부1회	20~10	5이하	3이하

- <비고> 1. “~” 기호 왼쪽은 그 금액 이하, 오른쪽은 그 금액 이상을 말한다.  
2. 출석요구불응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, 증언전체 또는 일부거부 1회는 1일간 증언의 전체 또는 일부거부를 말한다.

## [별표4]

민간인에 대한 위반행위별 증인유형별 과태료 부과기준  
(제9조의2 제1항제4호 관련)

(단위:만원)

위반행위별	감사·조사대상 사건·사고관련 직접당사자	감사·조사대상 사건·사고관련 간접당사자	기타
	출석요구불응2회이상	100~70	
출석요구불응1회	50~35	30~25	20~15
증언전체거부2회이상	50~35	30~25	20~15
증언전체거부1회	30~25	20~15	10~5
증언일부거부2회이상	30~25	20~15	10~5
증언일부거부1회	20~15	10~5	3이하

- <비고> 1. “~” 기호 왼쪽은 그 금액 이하, 오른쪽은 그 금액 이상을 말한다.  
2. 출석불응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, 증언전체 또는 일부거부 1회는 1일간 증언의 전체 또는 일부거부를 말한다.

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

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

[ 1991. 4. 13.  
조례 제1383호 ]

개정 1994. 8. 25 조례 제1503호

개정 1994. 10. 26 조례 제1514호

개정 1997. 7. 7 조례 제1637호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(이하“감사”라 한다)와 행정사무조사(이하“조사”라 한다)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감사) ①의회는 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(이하 “감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.(개정'94. 8. 25)

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7일이내로 실시하되,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.

③감사 계획서에는 감사일정, 감사위원회의 편성, 감사요령,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.

⑤의회의장(이하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감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
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행할 경우에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(신설 '94. 8. 25)

제 3 조 (조사)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, 조사할 사안의 범위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가 발의되면 본회의 또는 조사특별위원회(이하“조사위

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

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한다.(개정 '94. 8. 25)

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.

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, 조사할 사안의 범위, 조사방법, 조사일정,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.

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.

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
⑧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행할 경우에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(신설 '94. 8. 25)

제 4 조 (사무보조자)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.

제 5 조 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본 청
2. 보건소
3. 농촌지도소
4. 위생환경사업소(신설 '94. 8. 25)
5. 군립도서관(신설 '97. 7. 7)
6. 상수도사업소(신설 '97. 7. 7)
7. 문화관광사업소(신설 '97. 7. 7)
8. 읍·면
9. 법 제95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(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)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. 다만,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.(개정 '94. .8. 25)

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2이상의

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

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를 하여야 한다.(개정 '94. 10. 26)

**제 6 조 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)** ①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도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한다.(신설 '94. 10. 26)

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.

**제 7 조 (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)**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

**제 8 조 (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)**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.

**제 9 조 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** ①현지확인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군수,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·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, 서류제출일,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(개정 '94. 8. 25)

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,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·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(신설 '94. 8. 25)

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(신설 '94. 8. 25)

⑤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,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.(신설 '94. 8. 25)

⑥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(신설

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

'94. 8. 25)

**제 9 조의1 (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)** ①의회에서 증언·진술하는 증인·참고인이 방송·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·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(신설 '94. 8. 25)

②의회에서 증언·진술한 증인·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.(신설 '94. 8. 25)

③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·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등 실비를 지급한다.(신설 '94. 8. 25)

**제10조 (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)**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,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·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.(개정 '94. 8. 25)

**제11조 (공개의 원칙)**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. 다만,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(개정 '94. 8. 25)

**제12조 (제척과 회피)**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

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.(개정 '94. 8. 25)

**제13조 (주의의무)**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
②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**제14조 (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)**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

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

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5조 (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) ①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.

②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.

③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.

제16조 (징계)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 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,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양주군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

제17조 (준용규정)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주군의회위원회조례와 양주군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.

부 칙 (1991. 4. 13 조례 제1383호)

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4. 8. 25 조례 제1503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4. 10. 26 조례 제1514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7. 7. 7 조례 제1637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 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 - 2 (생략)</p> <p>3. <u>농촌지도소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<u>군립도서관</u></p> <p>6. <u>상수도사업소</u></p> <p>7 - 9 (생략)</p>	<p>제5조 (감사 또는 대상기관) ① ----- -----</p> <p>1- 2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농업기술센터</u>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(<u>삭 제</u>)</p> <p>6. <u>상하수도사업소</u></p> <p>7 - 9 (현행과 같음)</p>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 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</p> <p>① - ③ (생략)</p> <p>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<u>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 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 보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할 수 있다.</u></p> <p>⑤ (생략)</p> <p>⑥ (생략)</p> <p>제9조의 1(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)</p> <p>① - ③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 신 설 )</p>	<p>① -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(삭제)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의 1(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)</p> <p>① -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의 2(과태료) ① 제9조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<u>관련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</u> <u>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</u> <u>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</u></p> <p>1. 양주군(이하 “집행부공무원”이라 하며, 감사·조사대상사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에 진출·전보되었을 경우 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에 대한 위반 행위별 직급별 과태료 부과기준은[별표1]과 같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	<p>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으로 진출·전보된 공무원의 직급은 감사·조사 대상사무 취급당시의 직급을 기준으로 한다.</p> <p>2. 제5조 제1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·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(퇴직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에 대한 위반행위별 직책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[별표2]와 같다. 이 경우 출석요구 당시의 재직자는 출석요구시점 현재의 직책을, 퇴직자는 감사·조사대상사무 취급당시의 최종 직책을 기준으로 한다.</p> <p>3. 감사·조사대상사무 시행기간 중에 당해 부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면직·과면 및 퇴직한 사람(이하 “퇴직공무원”이라 한다)에 대한 위반행위별 직급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[별표3]과 같다. 이 경우 직급은 감사·조사대상사무를 담당할 때의 최종직급을 기준으로 한다.</p> <p>4. ①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등의 공무원 및 임직원등을 제외 한 사람(이하 “민간인”이라 한다)에 대한 위반행위별 증인의 유형별 과태료 부과 기준은 [별표4]와 같다.</p> <p>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감사·조사기간의 범위안에서 산정한다.</p> <p>③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사실 통보등에 의하여 양주군수 (이하 이조에서 “부과권자”라 한다)가 부과징수 한다.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</p>

현 행	개 정 안
	<p>아니하였거나 증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④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양주군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.</p> <p>⑤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⑥ 부과권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⑦ 부과권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</p> <p>⑧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수 있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
현행	개정안		
	<p><b>[별표 1]</b>                     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직급별 과태료부과기준                      (제9조의 2 제1항제1호관련)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만원)</p>		
	위반행위별	위탁법인 및 단체	
		대표	임직원
	출석요구불응2회 이상	200~150	100~70
	출석요구불응1회	100~70	50~30
	증언전체거부2회이상	100~70	50~30
	증언전체거부1회	50~30	20~10
	증언일부거부2회이상	50~30	20~10
	증언일부거부1회	20~15	5이하
<p>&lt;비고&gt; 1. “~” 기호 왼쪽은 그 금액 이하, 오른쪽은 그 금액 이상을 말한다.                      2. 출석요구불응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, 증언전체 또는 일부거부 1회는 1일간의 증언의 전체 또는 일부거부를 말한다.</p>			

현행	개정안		
	<p><b>[별표2]</b>                      위탁법인 및 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직책별 과태료                      부과기준(제9조의 2 제1항제2호 관련)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만원)</p>		
위반행위별	위탁법인 및 단체		
	대표	임직원	
출석요구불응2회 이상	200~150	100~70	
출석요구불응1회	100~70	50~30	
증언전체거부2회이상	100~70	50~30	
증언전체거부1회	50~30	20~10	
증언일부거부2회이상	50~30	20~10	
증언일부거부1회	20~15	5이하	
<p>&lt;비고&gt; 1. “~” 기호 왼쪽은 그 금액 이하, 오른쪽은 그 금액 이상을 말한다.                      2. 출석요구불응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, 증언전체 또는 일부거부 1회는 1일간 증언의 전체 또는 일부거부를 말한다.</p>			

현 행	개 정			
	<p><b>[별표3]</b>                      퇴직공무원에 대한 위반 행위별 직급별 과태료부과기준                      (제9조의2 제1항제3호 관련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단위:만원)</p>			
	위반행위별	실·국장급	과장급	계장급 이하
	출석요구불응2회이상	200~150	100~70	50~30
	출석요구불응1회	100~70	50~30	25~15
	증언전체거부2회이상	100~70	50~30	25~15
	증언전체거부1회	50~30	20~10	10~5
	증언일부거부2회이상	50~30	20~10	10~5
	증언일부거부1회	20~10	5이하	3이하
	<p>&lt;비고&gt; 1. “~” 기호 왼쪽은 그 금액 이하, 오른쪽은 그 금액 이상을 말한다.                      2. 출석요구불응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, 증언전체 또는 일부거부 1회는 1일간 증언의 전체 또는 일부거부를 말한다.</p>			